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은 우측 QR코드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 (www.lst.g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검색 QR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생애 말기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면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본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존중받게 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해 궁금하시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National Agency for Management of Life-Sustaining Treatment

1855-0075, 수신자부담 1422-25

www.lst.go.kr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National Agency for Management of Life-Sustaining Treatment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 2. 4.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 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우측 QR코드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
(www.lst.g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 검색 QR

방문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

상담 등록기관 상담사와 1:1상담 진행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

등록 및 보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보관하여 법적 효력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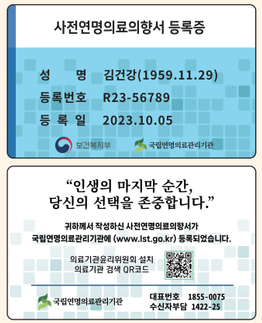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을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설명 사항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임종 기간을 연장하는 **연명의료 시술**(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에 대하여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향**을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란? 호스피스 대상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 법에 따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될 때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연명의료 등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라면 시행되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

✓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관리**합니다.

※ 등록기관 직접 방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변경 및 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철회 가능합니다.

등록기관 폐업/휴업

✓ 등록기관이 폐업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의 **모든 기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이관**됩니다.

※ 다만 휴업의 경우, 등록기관의 의사에 따라 관련 기록을 등록기관에서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열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가족 열람**을 허용한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명의료중단 항목 •



심폐소생술

심장마비가 발생할 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함으로써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

부작용 흉부 압박으로 갈비뼈 골절과 혈흉 및 기흉, 기도삽관으로 치아 손실 및 목소리 손상 등 발생 가능



혈액 투석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의학적 기술

부작용 카테터 삽입으로 인한 혈관 외상, 출혈, 감염 등 발생
혈액응고제 사용으로 인한 출혈 위험 발생 가능



항암제 투여

암을 축소, 억제,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시술

부작용 항암제가 정상세포를 손상시켜 위장장애, 탈모증 등 발생 가능



인공호흡기 착용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

부작용 기도삽관이나 기관절개술로 인해 치아나 기도 손상, 식도 천공, 피하기종 및 출혈 등 발생 가능



체외생명 유지술

심각한 호흡부전 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 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치료, 통상적인 전문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심정지 환자에게 체외순환장치를 사용하여 인공 순환을 유지하는 방법

부작용 출혈, 응고 장애, 도관 삽입으로 인한 허혈, 공기색전증, 혈전색전증 등 발생 가능



수혈

수혈은 정맥에 정맥관(IV)을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하는 시술로 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 또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필요할 수 있는 치료 방법

부작용 미열이나 피부발진 또는 체액 과부하 등 발생, 그 외 부적합 혈액 수혈, 알레르기, 급성 폐 손상, 감염 등 문제 발생 가능



혈압상승제 투여

쇼크, 중증 저혈압,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 혈관을 수축시켜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혈관 작용제

부작용 지속적인 혈압 상승제 투여 시 사지괴저 등 합병증 유발 가능



기타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